| 의 안<br>번 호 | 제3563호 |
|---|---|

#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월 31일 김포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2월 10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
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2월 18일

## 2. 제안이유

❍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그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.

❍ 긴급지원 대상자의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를 위해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에 의거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기준 구체화(안 제3조)

나.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조항 신설(안 제4조)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